

# 신법(神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sup>116)</sup>

장진영<sup>117)</sup>

본 연구에서는 신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성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신법에서 강조하는 성서적 이념과 사회복지법의 정신을 비교하여 기독교사상에 근거한 사회복지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믿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나눔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인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에 관한 절대성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성에 관하여는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이 우리나라 제헌헌법에 미친 영향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민족이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가치와 이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신법(神法), 사회복지법, 바이마르헌법, 기독교사회복지, 복지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회복

## 1. 서론

인간의 근본은 신에 의해 빚어지고(창 1:27; 시 100:3) 신으로부터 부여된 종교성을 갖고 태어난다(시 119:94,173; 렘 31:33). 크로마농인들과 선사시대 사머니즘적인 원시인들뿐만 아니라 문화와 문명이 눈부시리만큼 찬란하게 발달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다원적이거나(신 11:28; 사 45:20) 유일한 신성

116)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117) 서울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 신학박사

(신 6:4; 딤전 1:17; 2:5)등 종교를 갖고, 제각각 다양한 특징들과 그 차이는 서로 다르지만 그 본성이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고(잠 24:10) 종교적 믿음의 행위(자연적 믿음)를 한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구성되어 종교적 사색, 그리고 정념(正念)하여 초자연적이거나 무한한 어떤 절대자를 만들거나(신 11:26-28; 사 46:9) 그 신의 흔적을 추적하고 따라감의 오성(悟性)으로 나뉠 믿음의 삶을 갈망하는 종교적인 존재임을 고찰할 수 있다(전 3:11).

아주 옛날에는 인법(人法) 유스(jus)가 신법(祭祀法) 파스(fas)에서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 및 시민과 신들의 매개자(媒介者)인 신관단만이 소송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법에 관여할 수 있었다(최종고, 1986:25).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도 각기 신(神) 또는 신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 신들을 섬김에 있어 독특한 절차와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고 여겼다. 혹 어디로 이주하거나 지방에 가면 그 지역이나 그 지방 신들을 섬겨야 한다는 굳은 관념이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화 또는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나 신들이 개인·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믿었고, 전쟁 시에는 그들의 신이나 신들이 자신들을 위해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일반적 경향이였다. 하지만 표류하는 배처럼 인간들의 본성에 참 만족과 행복 그리고 평강이 고갈된(암 8:11) 덧없는 삶에(전 3:2) 하나님이 찾아온다. 신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해 전지전능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우리를 부르신다.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신의 성품을 통해 신과 관련된 법인 신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성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 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창 1:27-31).

현대국가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그 나라의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 실천되어짐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위임 통치기구이며 이 위임 통치된 나라들의 목적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정의구현을 위한 정치행위는 곧 신앙행위가 된다. 정치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임무인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신정정치시대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세운 것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왕 된 자들도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한다(신 17:19-20). 이는 신약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복음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일과 공의를 구현할 것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강사문, 2003:17).

본 연구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신법으로부터 사회복지법에 대한 기본이념과 가치를 규명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신법에서 강조하는 성서적 이념과 사회복지법의 정신을 비교하여 기독교사상에 근거한 사회복지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믿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나눔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인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에 관한 절대성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신법(神法)의 의의

### 1) 신법의 정의

신(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계신다. 법의 원천은 신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신의 존재 그 자체가 절대무오한 법이 된다. 인간은 신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신이 가지고 계신 신으로부터 나온 이 총체적인 모든 법을 신법(神法)이라 한다. 신의 법은 인간과 의논하고 합의하여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함과 스스로 계신 유일신만이 갖는 고유한 신의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시 119:90-94). 신은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신은 인간의 생각보다 우월하고 높기 때문이다(사 55:8-9). 신은 인간을 통해서 증거 받지 않으시고, 인간을 통해 영광 받지 않으신다(요 5:34; 41). 신은 어떤 환경이나 그 무엇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신의 뜻대로 당신의 경륜을 스스로 행하신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신의 생각, 신의 행동, 신의 말 그 자체가 신의 법이다(출 3:14).

성서는 신의 계시를 떠나서는 그리고 신의 행위 밖에서는 신의 뜻을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정의를 발현시키는데 있어서 그러므로 신의 뜻은 결코 어떤 고정된 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정돈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의 뜻이란 또 일종의 원리 같은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론체계를 연역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아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신 자신의 의지이며(신 1:17), 신의 뜻으로부터 이 정의의 완전한 척도인 심판이 발하여진다. 그러므로 법은 항상 신의 행위로 나타난다. 법은 신의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하며, 심판-정의-법이라는 순서는 신의 행위의 유추이기 때문에 규범성을 가지는 것이다. 성서에 있어서는 신의 뜻에 부합한 것만이 정의로운 것이며 정의로운 사람은 신이 그에게 열어준 길을 걷는 사람이다(Jacques Ellul, 1985:39-49).

가장 넓은 뜻에서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하며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신(神)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존재(天使)도 그 법을 가지고, 짐승은 짐승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법이란 그것과 여러 가지 존재 사이에 있는 관계와 이들 여러 가지 존재 상호간의 관계이다. 신은 우주에 대하여 그 창조자 및 유지자로서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신이 우주를 창조한 법은 그것에 따라서 신이 우주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신이 이 규칙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신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신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그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그것들을 만든 것은 그 규칙들이 신의 예지와 힘에 관계되기 때문이다(Montesquieu, 2013:25). 신의 창조 사역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충고, 명령을 받지 않으며, 창조를 해야 한다는 필연성조차 가지지 않았다. 이런 신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은 주권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며, 오직 신의 선하고 기쁜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한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Arthur W. Pink, 2011:16).

## 2) 성경에 나타난 법의 정신

성경에 나타난 의(義)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관계를 전제로 한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에 의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이 언약들을 모아 놓은 것이 성경이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다. 영어 성경에는 공의를 Justice로, 정의를 Righteousness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약 성경에는 미슈파트(mishpat)와 체데크(tsedakah)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 단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체데크’는 인간의 절대적인 윤리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의(義)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올바르게 살아갈 때 의롭다 하셨고(신 6:25) 이웃을 참소하지 않으며, 행악하지 않고, 훼방치 않으며, 주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도와줄 때 의롭다고 하셨다(시 15:3-5; 사 58:8-9; 겔 18:5-9). 따라서 체데크는 이웃에 대한 올바른 행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은 사유 재산의 보호(출 20:17), 착취와 횡포금지(출 22:21-27), 신속하고도 공정한 임금의 지급(신 24:14-15) 등 사회정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상거래의 기본은 '체데크의 저울'이다(레 19:36; 신 25:15; 겔 45:10). 이것이 정의(正義)이다.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올바른 사회질서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온 땅의 거룩한 심판자로서 언제나 자신의 법에 따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의로운 판단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에게는 영광과 영예를 높이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창 18:25; 욥 13:6-12; 시 143:11).

공의란 저울과 같이 공평한 추를 가리키며(잠 16:11), 마침내는 악인들을 심판으로 보응하신다(롬 1:32; 살후 1:8). 신명기에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하였다(신 32:4). 성경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임을 말하고 있다(시 89:14, 33:5, 97:2).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앉은 보좌의 두 기초는 바로 체데크와 미슈파트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은 체데크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전용득, 2013:115-118). 성경에 나타난 법의 정신은 '공의', '정의', '공평', '양심', '사랑', '인권의 보장'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3) 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상

#### (1) 하나님의 형상회복

고대 근동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왕을 지칭하던 말이었다. 구약학자인 폰 라드는 고대 근동 지역 제국의 대왕들이 광대한 영토를 통치할 때,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먼 변방지역에는 왕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움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왕의 통치권을 상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러한 관행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인간이 왕과 같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최고의 존귀함과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성서에서는 처음사람을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성서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강조하고 있고 구약은 사회적 약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차이에 관계없이 어린이와 어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자유인과 노예 누구나 왕과 같은 존엄성을 가지며 이것은 양도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인권과 그 존엄성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다. 칼빈은 인간이 스스로 '인간적이고 부드럽고 자비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자신과 이웃에게 책임적이며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웃을 모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종, 종교, 나이, 신분,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은수, 2008:23).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곧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천적(天的) 과제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처럼 그냥 존재하는 것이거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과제(통치와 공존의 과제)를 몸에 구체적으로 짊어지고 사는 존재다. 그 과제는 신이 '주신' 과제로 우리가 '쟁취'한 과제는 아니며, 인간은 그저 하나의 피조물인데 특수한 과제를 받은 피조물로서 우리는 주어진 과제인 대리자로서의 과제에 충실할 따름이다(김이곤, 1977:10-17).

복지사상과 관련한 신학적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창 1:27-31),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커다란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고, 어떤 결함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공간이었던 에덴동산에서의 추방과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으며(창 3:15),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이다. 창세기에서 바라본 기독교사회복지의 의의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창세기 사회복지 사상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하며, 기독교사회복지는 단순히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는 구원론적 신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김기원, 2009:68-69).

## (2) 섬김-봉사(아바드)

구약성경에서 섬기다는 뜻을 가진 `아바드'란 동사의 의미는 남을 위해 일하고 섬기고 받들고 시중드는 것으로 신약의 `디아코니아'와 대응하는 말이다. `섬기는 자' 그리스어 `디아코네인'(diakonein)은 어원 그대로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식탁에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눅 22:27). 디아코니아(Diakonia)라는 단어는 명사형으로, 우리 말 성경에서는 `직무'(행 1:17; 고후 9:12-13), `직분'(롬 11:13; 고전 12:5), `사역'(행 6:4), `사명'(행 20:24), `일'(딤후 4:11), `구제'(행 6:1), `봉사'(엡 4:12)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다(김한호, 2009:20-21). 구약에서는 디아코니아란 용어가 구약후기 생활권에서 사용되지만 주로 개인적 섬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남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고 받들고 수고하고 시중드는 일을 뜻하는 신약 성서적 의미와 일치한다. 구약에서 섬김의 의미를 찾아보면 섬김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고 섬김의 대상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까지 포함되고 더욱이 땅도 아바드(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다(창 2:5; 3:23; 4:2, 12; 삼상 9:10; 잠 12:11; 28:19; 스킴 13:5). 구약의 섬김의 의미인 `아바드'란 말은 구약에서 사용된 대로 또 칠십인역에서 번역된 대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강사문, 2013:190-213).

① 섬김의 일반적인 의미는 개인 또는 단체로 보수 또는 무보수를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곱은 라반을 처음에는 무보수로 라헬을 위해 칠년간 섬겼고, 후에는 칠년간 라헬과 보수를 위해서 또 그를 섬겼다(창 29-30장). 출애굽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이집트의 바로를 섬겼으며(출 1:14), 성읍에 속한 땅을 가는 일(하아브두후)도 성읍을 섬기는 일(하오베드 하이르)로 표현된다(겔 48:18-19). 또 성전에서 섬기는 일 즉 성전봉사를 뜻하기도 한다(민 3:8; 4:23, 27; 7:5; 8:22).

② 섬김이란 사랑의 실천 행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열조를 사랑하시고(신 4:37), 다윗을 사랑하시고(삼하 12:24), 의인을 사랑하신 것(시 146:8)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사랑의 실천행위를 섬김이라고 한다.

③ 섬김이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섬기는 일이다. 섬김은 또한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에 따라가는 것이다.

④ 섬김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에게 복종하는 행위이다. 출애굽을 하려는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다(출 3:12; 4:23; 7:16).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하며 정성껏 섬겨야 한다(신 28:47; 시 100:2).

⑤ 섬김이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이다. 곧 복음전파와 구원사역도 섬기는 일과 일치한다는 말로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⑥ 섬김이란 인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 피조물까지도 섬기는 일이다. 아바드란 단어의 의미는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 자연을 관리하고 주인의 말씀에 따라 정원사처럼 잘 가꾸고 관리하라는 말이다.

### (3)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보장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토라(Torah)에는 계약법전, 성결법전, 그리고 신명기 법전 등 중요한 세 가지 법전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법전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난한 자,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 거지, 그리고 노예의 기초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 법전이 제정된 주요 이유는 하피루로 지칭된 히브리인들이 한 때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중동지역 전역에서 지역 토착민보다 더 낮은 계층에 속하여 극한의 상황 속에 살면서 수모를 당했고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비극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계약법전은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는 인간의 기초생활권이 위협받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비극적인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 사회보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계약법전은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어느 사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특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법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 노예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였던 것이다(최무열, 2008:20-21).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태초의 에덴동산에서부

터 그들이 살아온 애굽을 탈출하여 차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고통과 수난의 연속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이루어져 있다. 출애굽기의 복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모세는 억압받는 동족을 구원하는 복지사로서 부름을 받았다.

계약의 법전에서 개인은 법정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각 개인은 위격적(位格的)인 존재로서 '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각 개인에게,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각자에게, 철면피의 인간에게 구박받는 고아에게, 사정없이 학대받는 과부에게, 저녁에 추위를 막을 겉옷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유별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신다. 만일 빈자들이 신에게 부르짖으면, 신은 즉각 그 외침을 듣고 그 호소에 곧장 개입할 것을 서두시고 빈자의 복수자요 해방자로 처신한다. 이 복수는 자비하신 신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각자가 보호자·피의 복수자·후견인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 같은 보호자를 갖지 못한 빈자에게 야훼가 해방자 혹은 복수자로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서인석, 1983:89).

#### (4) 빈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정의를 내포한 성결법전

레위기는 구출 받은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성결법전이다. 성결법전은 레위기 17장-26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제단과 제물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의식서와 성결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레위기 19장에는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룩한 삶을 위한 다양한 길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중 18절의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명령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레위기서의 사회복지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매일의 삶속에서 거룩을 담아내야 한다(전정진, 2005:202-205).

레위기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특히 추수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 둘 것을 요구한다. 곡식을 거둘 때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어서는 안 되며,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되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서도 안 되며, 떨어진 열매를 주워서도 안 된다(레 19:9-10).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추수를 한 후에 그 중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받는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차별이 생기지 않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정중호, 2004:320).

이삭을 줍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거의 가지지 못했으며 식량을 구하기 위해 노동에 의존해야 했다. 나그네에게 친절한 대접을 하는 것은 사막에서 사는 삶의 필수조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손님대접은 유목민들에게 가장 귀중한 덕목들 중의 하나로 여겨졌다. 대부분 종족들에게서 나그네 보호의 의무는 ‘그 나그네가 먹은 소금이 그의 위장에서 분비될 때까지’로 되어 있고, 시리아의 르발라 종족과 같이 거대한 종족들에게서는 또 사흘 동안, 그리고 15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보호의 책임을 졌다(Roland de Vaux, 2009:32).

성결법전은 계약법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경제정의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품삯 지불 연기 금지가 그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군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레 19:13)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품삯을 자신의 의지대로 연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경제 분배 정의는 영구적 토지 판매 금지로 연결된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라는 선언은 토지를 통하여 경제 분배의 정의를 더욱 확고하게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런 경제 분배의 정의는 비단 땅 뿐만 아니라 영구적 종의 판매금지까지 연결되었다(레 25:39-46). 이러한 법령은 그 당시 근동지방의 문화로 비추어 볼 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형태의 사회안전망 및 사회보장정책이 아닐 수 없다(최무열, 2008:24-25).

#### (5) 희년

희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요벨’은 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을 불어 희년이 되었음을 알리던 풍습에서 전래되었다. 희년은 일곱 번째 안식년의 다음 해로 실제로는 49년째 중간부터 시작되며, 본래의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토지 회복 제도이다. ‘해방의 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때도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은 휴경(休耕)해야 하며 노동이 금지되었고 여러 가지 해방의 규례가 시행되었다. 희년의 최대의미는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는 것인데, 참 자유의 선포가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 땅의 원소유주에게로 복귀, 모든 빚의 채권자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눌린 자들에게 자유는 희년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남희수, 2007:47-48).

희년은 가난을 제도적으로 제거하여 경제적 균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며 단순한 구제를 넘어서 철저히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희년은 모든 가족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원래 상속받은 유업에 돌아가도록 명함으로써 자비를 가장한 확장정책에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를 구분시켜 주고 있으며 과도한 탐욕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제도를 제정한 근본적 원인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는 그가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망각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약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희년에는 하나님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나눔을 통한 인간과의 화해가 시도되었고,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대제사장은 나팔을 불어 희년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땅과 사람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감으로써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해방,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다(최무열, 2004:65-66).

#### (6) 십일조 규정을 통한 약자보호

모세오경에는 세 가지 유형의 십일조가 등장하는데, 첫 유형은 기업(基業) 해당용 십일조이며, 이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다. 레위 자손은 제사와 성막 관련 봉사에만 전념해야 했던 까닭에 다른 지파처럼 기업(땅)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십일조, 즉 땅의 곡식과 나무의 과실 및 각종 짐승(레 27:30-32)을 레위 자손에게 할당했다. 이로써 레위 자손은 생계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부과된 종교적 사명에 진력할 수 있었으며, 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십일조 가운데 십분의 일을 다시 제사장에게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민 18:26-28).

십일조의 둘째 유형은 절기충당용 십일조라 부를 수 있으며, 이것은 각종 절기에 필요한 예물을 위한 것이었다. 이 유형의 십일조는 온 가족이 레위인과 더불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일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만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여행하기 힘들 때는 십일조의 내용물을 돈으로 바꾸었다가 예루살렘에 도

착해서 다시 우양이나 포도주 등 자신이 원하는 품목으로 바꿀 수 있었다(신 14:24-26).

마지막 유형은 빈자(貧者)지원용 십일조로 3년에 한 번씩 헌납하도록 되어 있었다(신 26:12). 이 십일조는 공동체에서 경제적으로 빈핍한 계층의 유익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자신이 거하는 성읍 창고에 비축하여 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 성 안에 거하고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하게 했다(송인규, 2009:88-91). 이것은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존재하므로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서 구제하라는 말씀(신 15:11)을 규례를 통하여 의무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성문 안에 거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볼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으며, 이들은 평소에도 기업이 없이 빈궁한 삶 속에 있었으므로 매 삼년마다 드리는 십일조를 가지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것으로, 애 굶에서 종살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의무로 주어졌다(남희수, 2007:45).

생계의 수단이 없는 가난한 자들, 즉 레위인과 이방나그네, 과부와 고아들은 이러한 십일조로써 혜택을 받아야만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에서의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의 생존권에 관계된 법제이다. 따라서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은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양식 분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그 같은 자선 사업에 종교적 의무감을 더하기 위해 이스라엘인은 중앙 성소에 나아가 그가 법대로 시행했음을 고백하도록 하고 있다(오덕희, 2001:20). 이것은 예배자가 법이 정한대로 십일조를 내어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었으며, 또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도 잊지도 않았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의 한 형태였으며(신 26:13-14),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지 그것과 무관한 단순한 사회봉사나 독립적인 부조로 설명되지 않는다(Otto Kaiser, 1996:149).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며 우리도 그같이 해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의 의무이다. 하나님은 구약성서, 특히 모세 오경 및 계약법전, 성결법전 그리고 신명기법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규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경험한 적 없는 큰 복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으로 제정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야말로 축복중의 축복임을 천명하시는 것이다.

### (7) 복음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구약의 나눔의 정신은 신약, 특히 그리스도의 박애정신과 궁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사상과 철학으로 이어졌고, 이런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의 행위는 당연히 신약의 여러 곳에서 거론되어지며, 이러한 사랑의 나눔에 대한 사상은 공관복음, 바울서신 등 모든 신약성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수의 공생애를 중요한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말씀선포'와 '치유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양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개별화된 기능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양면성은 특히 마태복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수의 사역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치유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치유활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가 된 인간의 전인적인 치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그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예수 자신이 그를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구약에서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 자신은 낮은 자를 불쌍히 여겨 치유하시고, 반대로 부유한 자에 대하여 나눔을 실현할 것을 엄히 종용하시며, 그의 선교사역에 있어서도 통전적 선교관으로 임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회봉사와 함께 사회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와 사상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마 5:13-14)”는 성경말씀은 크리스천들의 사회 개혁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성철, 2003:55).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기독교사회복지를 직접 실천한 모범자로 그려지고 있고, 구약의 복지가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중심이었다면 신약시대의 복음서에 드러난 복지는 하나님나라 회복을 위한 복지라 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통하여 하나님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기독교사회복지의 중심인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준 복지는 병든 자, 가난한자, 과부, 약자 등에 대한 배려였으며, 복지대상자들을 외면한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셨다(마 25:41-46). 그러므로 기독교사회복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실천해야 할 필수이며 사명과 책임과 의무사항이다.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주린 자, 나그네,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the least of persons)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영생의 조건임을 명시해 주고 있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자세로 실천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마 6:1-4).

누가복음 4장 18-19절에서는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사역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천명하시며 포로된 자, 눈 먼 자, 눌린 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의 삶을 나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가 친히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이시고 또한 어리석은 부자의 사건을 통해 탐욕으로 망가진 인생과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삭개오를 제시하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나눌 것을 교훈하신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눅 10:30-37)는 불우이웃, 소외층을 대상으로 원조하는 사회사업 기반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의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교육),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전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봉사) 사역으로 요약해 볼 때 예수그리스도는 훌륭한 사회복지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칙론을 일러주셨다(나병갑, 1986:46).

#### (8) 초대교회 사회복지(성도들의 자발적인 나눔의 역사)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조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과 철학은 초대교회 부활공동체의 오순절 성도의 교제로 확산되었으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였고 그 결과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사랑과 모든 것을 나누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구약의 토라의 정신, 즉 하나님의 의도적 사회보장제도로써의 자발적 나눔이 정확하게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재건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자발적 나눔은 교회의 성장과 함께 보다 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는 구제사역에 전념하게 하려고 일곱 집사를 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제자의 수가 하루에 3천명이나 더하여 갔다. 이는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었기 때문이었다(행 2:41-47).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복음전파의 열정 못지않게 구제활동에도 적극적이었는데, 사도행전은 당시 교회가 상호부조를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로 알고 실천하였음을 보여준다(행 4:32-35). 복음증거와 구제활동을 병행했던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웃에게 칭찬을 들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 복음 선포와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의 생활을 돌보는 것은 초대교회 사역의 필수적인 내용이었는데, 비록 초대교회가 이런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복음전파와 함께 구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과제였으며 교회사역의 본질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 없다(김한옥, 2004:187-189). 초대교회 시대는 예배와 봉사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도와 봉사라는 복음의 양면성의 균형을 잃지 않았고, 이 시기에는 제도적 복지정책이 없던 시대였으므로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물질적 위안을 제공한 유일한 기관이었다. 초대교회의 상호부조는 초대교회가 박해와 수난시대를 겪으면서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이 시대의 상부상조적 구제 사업은 주로 신앙의 박해로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며, 석방운동을 전개하면서 신앙심을 격려하는 일과 교회 고아와 기아를 맡아서 양육하는 일이었다. 또한 초대교회 시대의 구제 사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등 구체적 사회봉사로 나타났고, 이런 구제 사업은 구원의 신앙에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김성철, 2003:57-58).

#### (9) 청지기 의식

구약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도적·자발적 나눔을 통한 안전장치라고 한다면, 신약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청지기 의식으로 인한 나눔의 운동으로 집약할 수 있다. 청지기란 사회적·경제적 개념으로써 관리인이나 책임을 맡아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으며(갈 4:2), 첫째, 경제적인 개념으로 물질의 소유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재산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뜻에서 청지기 직분을 대변할 수 있으며 청지기는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독점하려는 욕심을 경계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사람의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는 뜻으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물질보다 강조하고 살아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있다. 이처럼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배만 위하는 어리석음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청지기 의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복지 의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 복음과 복지의 사역을 위임받은 초대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나눔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복지 의도를 청지기들에게 위임하고 계신다(눅 12:42-43).

이상에서와 같이 구약은 교회사회사업 실천을 위한 철학적, 원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약은 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약은 계약법전,

성결법전, 그리고 신명기 법전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며 의도적인 나눔의 삶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약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청지기의식으로 살아감으로써 상전이 아니라 종의 정신으로 자신만의 삶을 강조하지 않고 철저히 공동체적 연대와 책임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서가 제시하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사회복지법의 의의

####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어의적으로 social+welfare(=well+being)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안히 그럭저럭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스킴드모어에 의하면 사회복지란 개인과 집단이 생활과 건강의 만족한 수준을 달성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욕구와 조화되게 그들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개인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사회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이다(Rex A. Skidmore, 1976:3-4). 또한 사회복지와 같은 의미로 흔히 쓰이는 용어인 사회사업에 관하여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에 따르면 사회사업이란 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가 그들이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도록 능력을 강화 또는 회복시키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전문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사업의 실천은 사회사업의 가치, 원칙, 그리고 사람들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개인과 가정과 집단에 상담과 정신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 지역사회 또는 집단이 사회서비스와 건강서비스 제공을 돕는 것, 관련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의 전문적인 적용으로 구성된다(DiNitto and McNeece, 1997:6).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두 가지로 파악하였다(Wilensky and Lebeaux, 1965:138-140).

사회복지법은 관습법→종교법→시민법→사회법→노동법→사회복지법에서 그 유래를 살펴보아야 한다. 시민법의 발상지로서 로마제국은 세계를 법으로 통일했다고 할 만큼 의미를 두고 있으며,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이다. 시민사회란 자본주의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이 봉건주의사회

의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통해서 건설한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자본주의 자유경쟁체제에서 계약자유 원칙,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불가침 원칙,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자유와 평등을 구가했던 시민사회는 산업자본에 의하여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자유는 자본가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법 앞에 평등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인 무산계급과 자본가인 유산계급 사이의 자유와 평등을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사회법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 이러한 사회법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계약자유 원칙을 수정하고 통제하게 되었는데, 사회보험법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계약원칙이 수정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사유재산에 대하여 조세 등 경제적 제재를 통하여 규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자기책임에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었고, 사회법은 자본주의 모순시정과 공공복리의 이념으로 특정계층을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등 각각의 입법들을 태동시켰다. 노동법은 구체적인 사회법과 균형의 사상 및 배분적 정의를 갖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이용환 외, 2007:13-14).

사회복지법(social welfare law)은 사회복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어의적으로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법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적, 집단적, 지역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예방·보호·치료·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뜻한다.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주로 실정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은 형식적으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의 총체이고, 이념적으로는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체계이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복지권(welfare right)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규정한 법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김기원, 2007:51-52).

## 2)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는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사회

복지법의 분석적 차원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을 다른 법과 구별해 주는 특징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은 주체, 객체, 가입대상 또는 목적, 문제, 방법 등으로 그 내용을 구별할 수 있다.

(1) 주체 : 사회복지법상의 행위 주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된 주체를 말하며, 국가와 민간으로서 전 국민이다. 국가는 예방적, 제도적, 재정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은 자발적, 전문적, 가입적 책임을 다한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법제도를 만들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책임을 갖는다. 민간은 국가의 위임을 받아 주로 사회복지의 법령 안에서 시설기관의 운영이나 심리·사회적 개입 등 전문적 실천의 역할을 한다.

(2) 적용대상 :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은 작게는 요보호성의 미자립자들이며 크게는 일반국민이다. 요보호성의 미자립자는 연령, 건강, 소득, 장애 등으로 인한 비복지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회의 도움이 없으면 독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법의 영역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인해 매우 복잡한 사회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국민은 언제 어떤 문제로 비복지적 상황에 처해지게 될지 모르는 일이므로 미래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국민도 사회복지의 대상이며,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해당한다.

(3) 개입의 문제 : 사회복지법이 다루려는 현상은 국민의 복지를 저해시키는 문제현상이다. 이러한 문제현상에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4) 목적 :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생존권)의 보장이다. 사회복지법은 생존권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고, 사회법의 영역에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의 형태로 발달하여 왔으며, 사회권은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이래로 현대사회의 모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권리다.

(5) 개입방법 : 사회복지의 개입의 필요성은 사회문제로 인한 욕구의 결핍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화폐적 욕구와 비화폐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화폐적 욕구는 소득적 지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비화폐적 욕구는 비금전적이며, 심리·사회적이며, 의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사회복지의 개입방법은 소득적 차원에서는 화폐적 접근, 비화폐적 접근, 가입대상의 단위에 따라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통합적 방법이 있다(김훈, 2008:69-72).

### 3)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우리나라 헌법아래서 실정사회복지법제도가 나타나고 있는 기본원리는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헌법의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원리가 각 실정법에 반영되어 표현되고 있는데, 법치국가원리·민주국가원리·복지사회원리의 3대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입법되어 있다 할 수 있으며, 복지사회원리는 현대국가의 특징인 생존권적·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과 실정사회복지법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김근조, 2000:41).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존중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국제평화주의 등의 헌법의 기본원리를 지도원리로 하여 이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본원리를 사회복지제도와 현상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한 원리이다.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보장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이 천부인권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보장은 복지국가주의의 근본규범을 이루고 있고,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전체주의(全體主義)를 배격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주체는 모든 인간이다. 국적의 유무, 빈민이나 부자, 비장애인이거나 장애인, 아동이나 노인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 (2) 평등권 보장

헌법 제11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 사상은 중세에는 신 앞의 평등, 근대에는 법 앞의 평등,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사회적·실질적 평등으로 발전하였으며, 현대의 평등사상은 평균적 정의의 실현에 국한하지 않고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실질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 평등사상은 바이마르헌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헌법의 평등조항에서 차별은 금지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고, 정당한 이유와 합리적

인 근거에 의한 차별입법이 허용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상대적 평등은 우리 사회에 불평등은 존재하면 안 되지만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간다면 그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용인(容忍)할 수 있다는 롤스(Rawls)의 정의론 가운데 차등의 원리와 같은 의미이다. 장애인고용법 등과 같이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우선적 조치 또는 적극적 조치는 절대적 평등론에서는 강자에 대한 불평등이므로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적 평등론 하에서 인정되는 조치이다. 법률에 의한 평등권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한다(김기원, 2007:109-113).

### (3) 생존권 보장

생존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생활권적 기본권·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1919년에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은 제151조에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여 최초로 실정헌법상에 명문으로 생존권을 규정하였고 그 후 세계인권선언과 각국의 헌법이 이를 뒤따르게 되었다. 인간다운 생활권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보건권(제36조) 등을 보장하고, 그래도 국민의 최저 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공공부조의 방법으로 최종적 수단을 강구하여 보호한다. 또한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최저임금제의 실시, 적정분배의 도모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각종 독립법률이 제정되어 있다(김근조, 2000:43-47).

## 4. 신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성

신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이 우리 제헌헌법에 미친 영향을 통하여 그 관계성을 규명하였다.

### 1)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독일이 받아들인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라틴민족이 형성한 하나의 제국에 하나의 로마가톨릭교회로서 왕좌와 제단이 굳게 결합한 제국교회였으며, 제권과 교권이 정치적 투쟁의 역사를 걷는 가운데 대체로 교권우위를 통하여 완전한 사회로서의 로마가톨릭교회를 중심한 기독교공동체를 이루는 형태로 여기에 게르만족 자신의 자기교회제가 가미된 형태였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 패한 후 빌헬름시대의 막을 내리고, 1919년 1월 자유선거에서 국민의회 의원들이 선출되었으며, 바이마르에서 7월 31일 제국 의회가 소집되어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헌법이 채택되었고, 8월11일에 발효됨으로써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헌법인 바이마르헌법이 탄생되었다. 바이마르헌법은 19세기적인 자유주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국가의 이념을 가미한 특색 있는 헌법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근대헌법상 처음으로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입장을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고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세기의 현대적 헌법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은 근대적 헌법에서의 자유적 기본권과 같이 국가와 법률에 앞서 있는 천부의 자연권이 아니라,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창출된 기본권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약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을 처음으로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으로 독일 바이마르헌법이 제151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생존권 규정을 실정헌법상 최초로 규정한 이래로 세계 각국의 헌법이 생존권을 헌법상에 규정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바이마르헌법에서 국가와 교회의 기본원리는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유로운 교회를 실현하는데 있었으며, 종교단체에 대하여 ①국가로부터의 교회의 자유 ②국가에서의 교회의 자유 ③국가의 교회로부터의 자유의 3중의 자유로써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고, 제국헌법 135조-141조로 된 기본법 제3장 `종교와 종교단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국은 정당정치의 타협으로 자신의 입법관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각 주는 국가교회법적 주도권을 다시 획득하여 입법과 콘콜다트, 교회계약을 통해 `계약에 의하여 보장된 자원의 분리교회'라는 더 강화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독일 기본법은 전문에서 `신에 대한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독일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독일이 정교분리 원칙하에 국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공법상의 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종교영역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분

야, 사회복지 분야에서 교회의 역할이 인정된다. 공공 사회분야에서 교회의 독립적 활동과 자율을 보장하고, 심지어 국가가 교회를 대신해 교회세를 걷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런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독일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 2) 바이마르헌법이 우리 제헌헌법에 미친 영향

제헌 헌법은 전체적으로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에는 영미법적인 요소가 상당수 도입되어 두 체계가 서로 교차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한국 헌법의 제정에 있어서 특히 바이마르헌법을 이상적인 헌법으로 참고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첫째, 한국의 법률제도는 전통적인 대륙법계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이미 19세기 말에 지금까지의 중국법제와는 단절하고 로마법에서 기원하는 대륙법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대륙법계에 속한 일본의 영향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인 면에서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륙법이 관습법이나 판례법의 전통으로 축적된 영미법보다는 그 도입이 신생국가에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법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는데 이는 독일법 일변도였던 일본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다.

(2) 둘째, 헌법의 기초자들의 헌법사상을 들 수 있다. 유진오를 비롯하여 헌법기초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의 대부분이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들이 학생이었을 때 일본의 헌법학자들은 바이마르헌법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자유로운 헌법이라고 강의했으며,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3) 셋째, 바이마르헌법에는 한국의 현실적인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한국 민주당, 한국독립당 등의 민족정당들은 건국을 전후하여 계획경제를 정강(政綱)·정책(政策)으로 채택하고 있었으며, 기본권에는 근로자의 이익균점권(利益均霑權)을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상세한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이것은 급진세력의 사회주의적인 주장을 수렴하기 위함이었다(김효전, 1986:9-12).

제헌 헌법에서 도입한 바이마르적 요소는 사회적 기본권 채택, 바이마르헌법 제153조를 모범으로 한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제15조의 규정, 경제질서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151조를 모범으로 한 84조의 규정 등이다. 건국을 전후한 한국의 경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수탈과 미군정의 실정(失政) 등으로 파국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지도세력이었던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등의 민족정당들은 계획 경제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배경 아래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그의 헌법초안에 경제질서를 특별히 규정하게 되었다. 유진오에 의하면 제헌헌법의 기본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꾀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가 주장한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개념은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사회복지적 차원의 개념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기본권조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줌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을 국가의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개별조항과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우리민족이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가치와 이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다.

### 3) 헌법과 사회복지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정법이며, 근대 자유주의사상을 토대로 한 근대 입헌주의에 의하여 성립된 근본조직법으로서 국가통치의 근본조직에 관한 규정인 통치조직법과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지위보장 규정인 인권보장법으로 구성된 것이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입헌주의헌법이 대두하게 되었고 헌법이 국민의 국가계약의 문서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으며,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향상과 법치주의적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김동석, 1997:120).

### (1)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국가의 법 가운데서 가장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 중 사회복지법의 제정근거로는 제34조와 제10조 및 제11조를 들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에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법은 헌법 제34조를 제정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 제34조 1항은 사회권의 총칙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제정근거로 헌법 제10조 및 제11조를 들 수 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조문이 사회복지법의 제정근거가 되고 있다(박차상 외, 2003:119-121).

## (2) 헌법을 법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 제정

바이마르헌법이 제151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생존권 규정을 실정헌법상 최초로 규정한 이래로 세계 각국의 헌법이 생존권을 헌법상에 규정하기 시작하였고, 생존권사상은 현대국가에 있어서 사회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사회법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여 자본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자유와 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 제정되고 발전해왔다.

사회법은 크게 세 가지의 분야에서 발전해 왔는데, 첫째는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기본권 보장 및 생존권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과 같은 노동법 분야이며, 둘째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 보호법 등과 같은 경제법 분야이다. 셋째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실업·노령·장애·질병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관여를 규정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과 같은 사회복지법 분야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의 일환으로 발전되었으며 현대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였다. 국가는 사회복지제도의 체계를 구성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헌법의 생존권 이념 하에서 사회법이 발전되고 여러 영역으로 분화되어 가면서 사회복지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규로서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삼분법에 의한 분류인 공법, 사법, 사회법 가운데 사회법에 속하는 사회복지법은 제정법 가운데 공법인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인 법률로서 국회에서 제정되며,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세부적인 시행을 위한 명령이나 규칙을 사회복지관련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가

지는 자치법규를 사회복지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며,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조례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 5. 사회복지법에 내재되어 있는 신법의 사상

독일인들은 기본권에 관하여 이미 바이마르헌법 이전에 바울 교회 헌법 속에서도 보장되고 있었고, 라이히 입법이나 주(州)헌법 가운데에서 상당수 규정되고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바이마르 헌법 제2편의 기본권의 보장은 독일헌법사(獨逸憲法史)상의 신기원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권리보호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으며, 단순히 고전적인 기본권목록의 보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개혁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마르 기본권의 헌법사(憲法史)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김효전, 1986:26).

이와 같은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우리민족이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가치와 이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일 법과 영미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 법의 기초도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에서와 같이 기독교 윤리와 사상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은 헌법의 기본이념을 지도 원리로 하여 이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 안에도 역시 자연스럽게 기독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의 법의 기초는 기독교말씀에 기초한 규범이므로, 재판규범이 되고 우리의 행동양식의 준칙이 되는 법은 기독교 사상에 기초한 규범인데 반해, 사람들의 무의식의 세계는 유교, 불교 그리고 토속적인 신앙 등의 전통적인 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상을 빚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을 기독교의 말씀으로 점진적으로 채워 나가야 우리의 법질서가 이루어지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법적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김상용, 2003:115).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와 이념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의 의미를 갖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도 헌법의 기본이념을 지도 원리로 하여 이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도 역시 기독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법과 사회복지법은 이와 같은 관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의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기본법과 같은 사회복지 관련법에 신법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의 의미를 갖는 사회복지기본법의 각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법에 내재된 신법의 사상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신의 성품중의 성품은 복지의 하나님이다.

사회복지기본법 제1조의 '목적'과 제9조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복지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며, 인간이 에덴동산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사역부터 복지 의도를 갖고 역사하셨으며 신으로부터 복지수급권이 주어진 것이다.

### 2) 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자세

복지 실천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닌 절대적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신의 성품 자체가 복지와의 절대불가분성임을 성경이 증거 한다. 성경은 이웃을 돌아보고 마땅히 할 일(복지)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봉사와 사랑과 섬김으로 구제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도도하거나, 군림하거나, 무례하다든지, 수치심을 갖게 하고,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임해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천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함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 3) 복지(선행)를 실천하는 자에게는 영·육의 축복이 주어진다(보상)

'바레'는 홀로 지기 힘든 과중한 시련이나 고통, 어려움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상대의 짐(복지)이 과중하다 할지라도 서로 지라고 하신다. 사회적 약자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곧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들을 멸시함은 곧 하나님을 멸시함이 된다. 궁핍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우리의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되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 4)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고,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대한민국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 되시며, 신분의 차별이 없고, 인종차별철폐를 명령하시는 보편주의 사상의 하나님이시다.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가려면 법 개정 시에 보편주의사상의 인종차별철폐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도록 점차 속지주의도 병행하여 모든 인종에 차별 없는 사회복지 정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제에 있어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라 하시고, 과부명부(매트리쿨라)에 올린 참과부에게 경대하라고 하면서 선별주의를 말씀하신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공공부조'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선별주의이다.

#### 5) 하나님의 형상회복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사건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이다(전 3:15). 한사람(아담)의 죄로 인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죄(마귀)가 왕 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와 권리를 죄로 인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수수방관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고, 본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다시 찾으시는 것이다. 찾는 방법으로는 죄짓기 전의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바로 기독교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마 25:20-23)와 열 므나 남긴 자(눅

19:16-22)와 같은 자가 충성된 증으로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계 21:7). 여기에는 물질적(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성품의 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 인격적(영적)인 모든 것이 포함된다.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의 사업, 거룩한 사업, 하늘의 사업, 구원사업이라 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사업이므로 육신의 구제나 도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도록 순종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으로(엡 1:10), 에덴동산 회복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으로써(마 6:10) 스스로 계신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께 천지와 만물이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다.

## 6. 결론

신앙이라는 것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부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The Kingdom of Heaven)으로써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세전에 은밀한 가운데 미리 정하신 감춰진 비밀이 태동되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복지창시자라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자신의 말씀을 경청하며 교제 나누며 죽음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으며, 거짓, 부패, 파괴, 폭력 등이 없고 충분한 음식과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둘째는 복지창시자이나 영적으로만 치리하지 않고 인간이 되어 육신을 갖고 땅에 가난한 자로 직접 오셔서 몸소 체험하고, 스스로 낮고 천한 가난한 자로 오신 후 성령 하나님 또한 오늘날에도 가난한 자 안에서 성도들을 성전삼아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시며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머무르고 계신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 했으며, 우리의 이웃에는 이와 같이 가난한 자(병든 자, 고아, 과부, 빈핍한 자, 소외된 자, 독거노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삼아 와 계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삼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데려오게 앞서, 악한 마귀를 심판하여 불 못에 던지우게 앞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증거 하신다. 말씀은 `명령'이다.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 필연적,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존경하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셨다. 그

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각 세대를 계속해서 불러내어 주관하시며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역시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에 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난한 자(병든 자, 고아, 과부, 빈핍한 자, 소외된 자, 독거노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 전환되어야 한다. 주께서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고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이웃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가진 자는 어려운 이웃에게 마땅히 손을 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독교적 경제관념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것을 잠시 맡겨 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써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한 사역이므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문제는 그 자체가 선과 악의 문제이자, 영생과 영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으며, 바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주님 하신 일을 준행하여 순종해야하는 것인데, 주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과 직결되는 것이다.

셋째, 기독교사회복지는 섬김의 자세로 실천해야 한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몸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비밀을 알고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을 행하거나 구제를 할 때에 군림하는 자세나 거만한 태도, 비굴함을 느끼게 하는 등의 태도는 옳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이웃을 섬긴다. 이는 주님의 가르침으로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웃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으며,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전문적인 봉사자로 세워져서 사회의 약자들과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시작이 사회복지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지의도 위에 복음을 전파했고, 선교는 복음 선포와 그에 따르는 실천 즉 사회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배

려를 아끼지 않았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독교사회복지는 교회의 사명이며 본질이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의 의미를 갖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기독교와 맥을 같이 하여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법의 사상에 부합한 복지정책은 세상 가운데서 더욱 활발히 실천되어지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신법의 이념과 가치에 맞지 않는 복지정책은 신법의 사상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힘을 모아 앞으로 입법 시에 점차 성서적 이념에 맞게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근조, 2000, 『사회복지법론』, 서울: 광은기획.
- 김기원, 200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 김기원, 2009, 『기독교사회복지론』, 파주: 교육과학사.
- 김동석, 1997, 『생활중심 법학개론』, 서울: 일조각.
- 김성철, 2003, 『교회사회복지실천론』,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 김은수, 2008, 『기독교사회복지』, 서울: 형지사.
- 김한옥, 2004, 『기독교 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부천: 실천신학연구소.
- 김한호, 2009, 『장애인과 함께하는 디아코니아: 독일교회의 장애인 통합 모델을 중심으로』, 과천: 한장연.
- 김 훈, 2008,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학지사.
- 남희수, 2007,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박차상 외 3인, 2003,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서울: 학지사.
- 서인석, 1983,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왜관: 분도출판사.
- 송인규, 2009,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 서울: 홍성사.
- 이경숙 역, 1996, Kaiser, Otto/ 『구약성서개론』, 서울: 분도출판사.
- 이양구 역, 2009, Vaux, Roland de,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용환 외 8인, 200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대왕사.
- 전용득, 2013, 『교회와 법』, 서울: 청목출판사.
- 전정진, 2005,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 정중호, 2004,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 서울: 한들출판사.
- 최무열, 2004,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의 집.
- 최무열, 2008, 『사회복지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나눔의 집.
- 최영희 역, 2011, Pink, Arthur W,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서울: 도서출판사 누가.
- 최종고, 1986, 『법학사』, 서울: 경세원.
- 최종고, 1992, 『법과 종교와 인간』, 서울: 삼영사.
- 하재홍 역, 2013,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 『법의 정신』, 서울: 동서문화사.
- 한상범, 장인석 공역, 1985, Ellul, Jacques,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Law, 『법의 신학적 기초』, 서울: 현대사상사.

DiNitto, Diana M. and C. Aaron McNeece, 1997, *Social Work: Issues and Opportunities in a Challenging Profession*. United States of America: Allyn and Bacon A Viacom Company.

Skidmore, Rex A. and Milton G. Thackeray. 1976. *Introduction to Social Work*.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Wilensky, Harold L. and Charles N. Lebeaux, 1965,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The Free Press.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vine Law and Social Welfare Law

Jang, Jin Young

This study contemp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vine law and social welfare law.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the social welfare law that is founded on Christian principles by comparing scriptural principles emphasized in divine law and the mind of social welfare law. Another purpose is to provide direction and absoluteness of the pragmatism in which believers live a sharing life providing to the least of persons and to formulate the correct the image of God(imago dei) as pragmatic Christian social welfare.

The relationship of divine law and social welfare law was identified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German Weimar Constitution on South Korean First Constitution. Germany, as a Christian country, had inherent Christian ideas in the Weimar Constitution and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which was influenced by this constitution had naturally inherent Christian values and ideologies which may or may not be aware by our ethnic group. This can be said as a great blessing that God has granted to our ethnic group.

Key words: Divine law, Social welfare law, Weimar constitution, Christian social welfare, God of welfare, Restoration of God's image(imago dei).